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 제도가 중견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우석진(주저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genoswoo@gmail.com)

이명훈(공저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imh@mju.ac.kr)

이상민(공저자)

경기일자리재단 기획조정팀 대리  
(ismini1025@naver.com)

빈기범(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ink1@mju.ac.kr)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로 인해 동 제도의 배제 대상이 된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었는가를 “인과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로 인해 그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에게 편익이 발생하겠지만 그 배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피해와 같은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첫째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ROA, ROE, 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성장성 지표 중 매출액증가율과 총고정자산증가율에 대한 동 제도의 중견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어 보이나, 총자산증가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과적 관점에서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강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DID 분석에서는 매출총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및 총자산 수준이 감소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적합 업종 지정 제도에 따라 이로부터 배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피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에 동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중견기업의 성장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적합업종 제도, 동반성장, 중견기업, 처리효과

JEL: D47, D61, K2, L5

### 1. 서론

하였고,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sup>1)</sup>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은 여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난 10여년간 모든 정부가 추구해온 중요한 경제 정책이다. 다만, 집

2010년 말 정부 산하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

최초투고일: 2018. 4. 24 수정일: (1차: 2018. 9. 27) 게재확정일: 2018. 10. 24

\* 이 연구는 2018년도 명지대학교 교직원연구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권 정부가 이를 내세우면서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실천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고, 그 모토로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동반성장', '상생',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다양한 용어가 내세워진다. 하지만, 지금도 한국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은 아니다.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총자산, 총매출액, 총부가가치 등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이에 한국 경제를 대기업 중심 경제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반면,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에 의한 금융, 인력, 수출, 기술개발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며,<sup>2)</sup> 어느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 또한, 기준에 유지되어 오다가 2006년 폐지된 고유 업종 제도,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및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상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감안하면, 정책 및 법제적 환경 자체는 중소기업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2017년 5월 조기 대선을 거쳐 새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모토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기존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기도 했다.

한국 경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영문 용어인 SMEs(small-medium sized enterprises)는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중소기업(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절대적으로 옳은 학술적·법제적 기

준이나 정의는 없다. 통상 규모측면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인식되는 편이다. 하지만, 이들과 각 유형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규제는 크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경제를 논할 때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2017년 중반 최초 제정 및 시행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이익단체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중앙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중견기업정책과나 중견기업혁신과도 있다. 때로는 코스닥 상장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도 아니며 대기업도 아닌 기업으로 실재할 뿐만 아니라 차별적 특성을 지니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육성 정책도 중소기업 정책과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만큼 국민적 관심사는 아니면서 대기업만큼 경제 지배력이 있지도 않지만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기도 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에서 중견기업은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 제도로 인해 중견기업의 사업 범위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상기 언급한 중견련은 2017년 중견기업법 시행 이전 이미 조직된 이익단체인데,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시행되면서 동 제도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그 시점부터 보다 조직화되었고, 중견기업법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친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기 재단은 동 법률에 근거한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을 의미한다.

2)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앞서 코스닥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했다. 코스닥 기업은 자체 신용으로 민간으로부터 자본조달이 가능한 성장 단계의 기업이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700여개 상장사 중 중견기업으로 인식되는 상장사도 적지 않다. 그렇게 보면,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의도 상당하다. 용어 그대로 한국 경제의 중간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잠재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이들이 실제로 대기업 또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안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는 국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가 중견기업에게 각종 혜택이나 지원을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 Apple, Microsoft, Intel, Facebook, Fedex, Google, Amazon 등은 신생·벤처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거쳐 결국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사례이다. 대기업이 새롭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경제가 활력을 갖고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에서 근래 20여년간 새로 등장한 대기업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NcSoft 등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2011년 전후하여 중견기업은 동 제도에 따라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적합업종에서 배제되는 규제 대상이었다. 현재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 중인데, 2011년 이후 2013-2018년에도 새로운 적합업종의 지정이 있었다. 다만, 2011년 이후 중견기업들이 중견련으로 더욱 조직화되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견기업법의 신규 제정 및 시행, 중견기업법에 의한 중견련의 법정 단체 지정, 당시 중소기업청내 중견기업국 설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로

해당 부서 이관 등이 있었으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 중견기업을 무조건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지금은 중견기업법에 중견기업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던 즈음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었고, 중견련과 같은 당시 중견기업 이익단체(당시 비법정단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적 정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초기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적합업종에서 배제(축소, 중단, 진입 차단 등) 되는 대상이 되었다.

대기업은 기업집단이라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이므로 적합업종 제도의 규제 대상이 되어 발생하는 피해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한, 대기업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하지만, 단 하나의 업종을 영위해온 중견기업이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배제 대상이 된다면, 그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된다. 정부는 적합업종 선정을 세심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완벽한 제도란 존재할 수 없다. 아마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을 개연성이 높은 주체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일 것이라 판단된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인식되는 한 피해를 비껴나가기 어렵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최장 6년이라는 제한이 있기도 하며, 특정 품목이나 업종이 중소기업에게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제한 조건도 동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판단이든 전문가의 판단이든 항상 제1, 2종 오류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러한 오류를 최대한 교

정하여 양 오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은 시장일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편익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희생과 같은 비용을 수반한다. 더구나, 중견기업은 동 제도로 인해 특정 업종에서 배제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매우 직접적이고 심각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도 국민이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이해관계자도 국민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도 국민경제적 성장과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다. 정책 담당자의 경우 정책의 편익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크지만, 이에 따른 직접적인 부작용이나 비용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나아가, 동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순편익) = (정책의 직접적 편익의 합) - (그 정책이 없는 가상적 상황에서 편익의 합)'이 측정되고 이를 0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정책에 따른 사회 전체적 후생 수준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타당성"을 2011년을 전후하여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011년 최초 시행 이후 동 제도가 계속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후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초 시행의 효과는 비교적 분석하기 용이하다. 이를 정확히 하자면, '동 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편익', '동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편익' 등의 요소를 각각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요소 각각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 제도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집중하여 분석한다.<sup>3)</sup> 아울러,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피해를 유발하였는가를 "인과적 관점(causal relationship perspective)"에서 분석하기 위해 DID, 성향점수 기법 등 처리효과 방법론을 이용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중견기업의 의미와 한국 경제에서의 비중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및 이에 대한 중견기업 측의 입장을 검토하며, 고유 업종 및 적합업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제IV장은 실증분석으로 자료, 방법론, 결과 등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제V장은 결론 및 시사점이다.

## II. 중견기업에 대한 이해

### 2.1 중견기업의 개념<sup>4)</sup>

일반적으로는 규모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3) 피해라는 용어가 다소 선정적이고 마땅한 용어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의사소통상 편리하기에 본고에서는 피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2017년 새로 시행된 중견기업법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권자가 상당한 지분 소유를 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한다. 반면, 본고의 연구 대상 시점은 2011년 전후이고 이 당시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었다. 당시 중견기업 이익단체인 중견련이 자체적으로 중견기업 정의를 내세우기도 했고, 중견기업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절에서 중견기업은 2011년 즈음을 기준으로 하여 논의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규제가 각 유형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이들 기업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구분하는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다. 그렇다 보니,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대기업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은 아니므로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중견기업은 정부의 전반적인 기업·산업 정책에 있어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양상이다.<sup>5)</sup>

대기업 이익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있고, 중소기업 관련 이익 단체로 '한국중소기업중앙회'가 잘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중견기업 이익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매우 생소한 편이다.<sup>6)</sup>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견기업정책국"이 생긴 것은 매우 최근인 2012년이다.<sup>7)</sup> 이러한 환경 하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 편이다. 중견련은 산업발전법을 들어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이 아니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

지 않는 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sup>8)</sup>

결국,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이 결합하여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sup>9)</sup>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통계법도 관련)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의 정의를 적시하자면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표 1>의 여러 가지 기준 중 규모 기준 및 상한 기준을 이용하여 중견기업을 파악할 것이다. 독립성 기준은 본고의 연구를 위하여 획득한 자료에 적용하여 중견기업을 추출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나 공기업 또는 금융·보험업 기업은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분석할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영향력에 노출된 중견기업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을 선별하여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2.2 한국 경제에서 중견기업의 비중과 역할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sup>10)</sup> 2011년 말 중견기업은 총 1,422사로 파악되었고, 이는 전년 1,291개 기업에서 131개(10.1%)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

5) 아래는 한경비즈니스 기사 "둘째의 설움' 중견기업에 별 뜰 날 올까'의 일부이다.

30년간 각종 지원에서 밀려...산업부 정리로 '제2의 도약' 노린다.

(중략)

든든한 버팀목인 만형과 쟁겨워야 할 막내 사이에 끼인 둘째. 한국의 중견기업이 놓인 위치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이 만들어 내는 부(富)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차지한다. 비난을 받을 때도 많지만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축이라는 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한편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늘 한 걸음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업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은 중견기업을 늘 우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영원한 사각지대는 없나 보다. 최근 들어 중견기업 성장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며 중견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중략)

6) 2017년 시행된 중견기업법에 중견기업연합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였다.

7) 현재는 중견기업법 시행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 중견기업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8) 이는 2011년 당시 중견련의 주장인데, 현행 중견기업법의 제2조(정의)에서 중견기업에 관한 정의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9) 현재는 중견기업법에 정확히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10) 이 절의 내용은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2. 10. 29.)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 1〉 각종 법률을 고려한 중견기업 정의

| 기준        | 업종(산업분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규모<br>기준  | 제조업(C)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그리고 자본금 80억원 초과  | 상호<br>출자<br>제한<br>집단<br>기업<br>(공정위)<br><br>*금융 및<br>보험업(K)<br>의 경우<br>현행법상<br>중소기업<br>범위를<br>벗어나면<br>대기업 |
|           | 광업(B)<br>건설업(F)<br>운수업(H)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그리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br>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br>전문·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M)<br>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Q)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그리고 자본금 300억원 초과   |  |
|           | 농업, 임업 및 어업(A)<br>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br>도매 및 소매업(G)<br>숙박 및 음식점업(I)<br>금융 및 보험업(K)<b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R)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200억원 초과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  |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br>교육 서비스업(P)<br>수리 및 기타서비스업(S)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100억원 초과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초과  |  |
| 상한<br>기준  | 업종무관   | 우측기준 만족시<br>유예기간 없이<br>즉시<br>중소기업 졸업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
|           |  |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
| 독립성<br>기준 | 업종무관   | 우측기준 만족시<br>유예기간 없이<br>즉시<br>중소기업 졸업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
|           |  |                                      | 3년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  |
|           |  |                                      | 자산5,000억원 이상<br>법인(외국법인포함)이 주식등의<br>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br>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
|           |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br>출자비율에 해당하는<br>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br>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에<br>충족하는 기업 |  |

주1: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인정

주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관계기업 제도로,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간 지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중소기업 자격 유지를 위한 인위적 분사를 막기 위한 제도

출처: 2011년 당시 중견연 홈페이지

업이 549개(38.6%), 비제조업이 873개로 나타났다. 한편, 중견기업은 기업수로는 전체의 0.04%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견기업의 고용 인력은 82.4만 명으로 총 고용 인력의 7.7%를 차지한다. 2007-2011년 기간 고용증가율은 5.2%(15.1만개 증가)로 동기간 대기업 고용증가율 4.3%(20만개 증가)를 상회한다(부록 <그림 A.1> 참조).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603.3억 달러로 총 수출의 10.9%를 차지하는 걸 보면 수출에서 중견기업의 역할이 큰 편이다. 제조업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26.4%로 2007년(9.93%) 대비 2.7배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373조원(2010년 대비 6.6% 증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매출액 1위 및 2위보다 훨씬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부록 <그림 A.2> 참조).

2011년 실적으로 볼 때, 중견기업 1개 기업 당 평균적으로 매출 2,700억원, 수출에서 8,800만 달러, 종사자수 580명의 영업 성과 및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자평하면서, 2015년까지 중견기업을 3,000개로 늘리고, 중견기업이 성장의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부록 <그림 A.1>, <표 A.1> 참조).

이상으로 논의한 중견기업의 실적과 비중은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중견기업에 대한 주무 지원 부처인 당시 지식경제부가 작성하여 발표한 자료이므로, 다소 과대평가될 개연성은 있다. 그렇더라도,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한 수준이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II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중견기업

#### 3.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중견기업의 입장

앞서 언급했듯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직접적 피해에 노출된 주체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철수하거나 진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기업집단 전체 현금흐름에 비하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이라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적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대기업도 동 제도에 대한 반발이 크지만 실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충격은 매우 직접적이며, 중견기업이 그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생존까지도 위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동 제도에 대한 반발은 대기업 이상으로 크다. 이에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다(부록 <표 A.2> 참조).

중견기업은 기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법제적으로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는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경우 대기업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는 중견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결국,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공정거래법을 모두 고려한다면,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법률 및 시행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을 들고 있다.<sup>11)</sup> 중견련은 이들 법령 등에서 중견기업 개념이 없어 법령 간 충돌이 있고 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시하면서 각종 법률에서 중견기업의 명시적 예시에 관한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sup>12)</sup>

중견련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 대기업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반발했다.<sup>13)</sup> 중견련의 동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 주장을 부록 <표 A.2>에 제시하였다. 과도하게 중견기업의 입장만 강조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적지 않은 항목은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중견련은 적합업종 제도에서 중견기업이 동 제도에 따른 시장 활동과 진입의 배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견련의 주장대로 또는 본고에서 앞서 논의한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3.2 기존 연구

### 3.2.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분석한 연구부터 살펴보자. 이들 연구는 크게 동 제도에 대한 지지, 반대 또는 중립 등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 제도를 지지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극수(2014)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법적 처벌 기준, 이행강제금제도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기룡(2012)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 폐지 이후 해당 업종의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세종(2011)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개요 및 주요 쟁점, 제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자존, 자율, 자강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행동우선으로 실천하고, 적합업종 포함한 동반성장 관련 법률 정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대하는 견해를 지닌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주선(2013)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점·제과점 등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강창동·신건철·장재남(2012)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 상승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지속해온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과정과 배경을 고려했을 때, 적합업종 지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조동근(2011a)은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동근(2011b)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작위적인 시장 분할로 구조적 한계를 지니며, 칸막이식 보호 장치는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인학(2011)은 두부 시장의 고유 업종 지정 및 해제, 신규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기업의 시장 진입은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포함하여 경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관한 법률이다.

12) 중견련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www.ahpek.or.kr>

13)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1a, 2011b)를 참조하였다.



제적 효용을 약 43%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적합 업종 제도가 불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중립적인 견해를 지닌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승우(2013)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였으나, 정부의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가 타 항목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고윤석·김병진·강성욱(2012)은 '적합 업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목적, 운영 형태를 논의하면서 적합 업종을 통해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필현(2011)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의 방법론적, 경제적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의견,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선화(2012)는 적합 업종 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하였다. 김은경·최용환(2011)은 적합 업종 제도에 대한 평가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3.2.2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에 관한 연구

1979년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제도는 대기업의 특정 영역 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중소기업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제도이며, 당시 중소기업청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취지와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제도는 2006년에 폐지되었고, 유사한 제도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가 2011년 다시 시행된 것이다.

이 제도에 관한 많은 다음과 같은 많은 기존 연구

가 있다: 이혁우(2013)는 고유 업종 품목의 업체 및 출하액 자료를 통해서, 고유 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간 과다경쟁, 교환의 강제, 대기업과 해외 대기업 간의 역차별, 품질악화로 소비자의 가치하락 등의 초래가 고유 업종 철회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김영수(2011)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보호받은 382개 중소기업 경영 지표를 분석하여, 고유 업종 해제 후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의 증가 등 성장성 지표 개선되었고, 부채비율 하락 및 유동비율증가 등 안정성·유동성도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윤보·이동주(2004)는 자료 분석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고유 업종 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은자(1998)는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심의섭(1996)은 경제정책이 규제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거두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진수(1996)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및 해제가 무역특화지수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0개 품목에 대한 패널 데이터 회귀분석의 결과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가 국제경쟁력에 미친 효과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김갑곤(1994)은 고유 업종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 업종 제도의 장기화, 과잉보호로 인한 경쟁력 약화, 경쟁제한으로 시장 효율성 저하, 자생력 상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을 제기하였다.

### 3.2.3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의 인과적 효

과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전후 비교 방식으로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이는 시간에 따른 효과가 없다는 비교적 강한 가정하에 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DID 및 성향점수 기법을 준용한다. 이를 방법론은 흔히 처리효과 기법으로 불리우는데, 전후비교나 횡단면 회귀분석에 비해 보다 인과적 효과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제도로 인해 배제되는 중견기업을 분석하였다. 이는 동 제도의 부작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에서 나오지 않았다.

## IV. 실증분석

### 4.1 분석의 개요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에 피해를 미쳤는가를 인과적 관점에서 추론하고자 한다. 중견기업의 수익성 지표로 ROA, ROE, 영업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의 지표를 사용하였고, 성장성 지표로 매출액성장률,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아래 각 지표 산출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지표의 단위는 모두 %이다.

#### 수익성 지표

- ROA (%) =  $100 \times \text{당기순이익} / (\text{당해연도 총}$

자산과 전년도 총자산 평균)

- ROE (%) =  $100 \times \text{당기순이익} / (\text{당해연도 총자기자본과 전년도 총자기자본 평균})$
- 영업이익률 (%) =  $100 \times \text{영업이익} / (\text{당해연도 총매출과 전년도 총매출 평균})$
- 매출액총이익률 (%) =  $100 \times \text{매출총이익} / (\text{당해연도 총매출과 전년도 총매출 평균})$   
=  $100 \times (\text{매출} - \text{매출원가}) / (\text{당해연도 총매출과 전년도 총매출 평균})$

#### 성장성 지표

- 총매출성장률 (%) =  $100 \times [\ln(\text{당해연도 총매출}) - \ln(\text{전년도 총매출})]$
- 총자산성장률 (%) =  $100 \times [\ln(\text{당해연도 총자산}) - \ln(\text{전년도 총자산})]$
- 총고정자산성장률 (%) =  $100 \times [\ln(\text{당해연도 총고정자산}) - \ln(\text{전년도 총고정자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2011년부터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동 제도의 최초 시행인 2011년 지정 종목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2012년 이후로는 2011년 지정의 효과가 잔재하여 나타날 것이므로 그 효과를 제거하는 다른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으로 배제 대상이 된 중견기업과 그렇지 않은 매칭 중견기업의 평균적인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다. 하지만, 중견기업이라도 각 기업별 특성이 상당히 다르기에 이러한 단순한 시계열 추이의 분석에서 동 제도가 중견기업에 미친 효과를 적절히 추론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처리효과(treatment effect) 방법론에 의한 정책의 인과적 효과 분석을 한다.

처리효과 방법론은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고 파악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다. 생명과학 분야를 포함한 이공계 분야에서도 처리효과 방법론은 매우 중요한 통계적 기법이다. 이공계 분야에서는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여, 서로 유사한 처리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을 설정하고, 처리집단에 처리(treatment)를 가하고, 통제집단에 처리를 가하지 않은 채(때로는 심리적 효과 차단을 위해 가짜 처리를 가한 채), 각 집단의 평균적 반응 차이를 통해 처리(예를 들어, 신약 개발 시 신약 투약)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처리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이 외생적 · 무작위적으로 통제되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exogenously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험 자료가 아닌 관찰 자료에서 처리 여부는 외생적이며 무작위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정책은 하나의 처리로 볼 수 있으나 그 처리가 무작위적이고 강제적으로 통제되어 실시되지 않는다. 동 제도가 실시되어 모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부분이 일률적으로 동 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상이 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 단체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 업종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을 선택해야 하고(self-selection) 정책 집행 당국도 선발 ·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에 따른 처리 여부는 다양한 관측 · 미관측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일 가능성이 높다.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인 복수표본 t-검정이나 회귀분석으로 처리효과를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하나의 처리로서 이에 의하여 특정 집단이 일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라는 이를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로 볼

수 있으며 통상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으로 처리효과 식별이 가능하다. 처리 여부에 대해서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이 있는 경우라면 이중차분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때에는 매칭(matching),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통제함수(control function technique) 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에 있어 중견기업에 미치는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은 동 제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규제를 받게 해달라고 스스로 선택할 리 없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서 배제 여부는 강제적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정부의 적합 업종 지정이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을 리는 없다. 거시경제 환경, 산업특성, 업종특성, 기업특성, 중소기업의 신청 여부, 시장점유율, 업자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정부가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 과정(decision process)을 명확히 안다면 이를 최대한 적절히 모형화하고 통제하여 매우 신뢰할만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정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계량경제학에서는 순수한 통제된 실험 하에 얻어진 자료에 의하여 처리효과를 추정이 아니라, 상기와 같은 각종의 내생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내생성을 제거(통제)하면서 처리 효과를 추정하는 기법이 발달하였다. 주로 성향점수 기법, IV(instrumental variable, 도구변수) 기법, 로이 모형(Roy's model)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DID, 성향점수 기법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정책에 의한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가 해당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

한다. 다만, 중견기업이 받는 처리가 자연실험으로 는 파악하기 어렵기에 DID보다는 성향점수 기법이 보다 나은 방법론으로 보인다.

#### 4.2 자료 및 표본 구성

우선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표본 구성을 살펴보자. 연도별 기업 회계 자료를 2007-2013년 까지 KIS-VALUE의 기업 DB에서 확보하였다. 물론 그 이전 자료도 추출 가능하지만, 적합업종 제도가 2011년 이후 업종이 지정되면서 시행되어 그 이전 자료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했다.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전후의 자료가 중요하다. <표 2>는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이 명확한 것으로 파악된 53개 품목을 나 타낸다. 2011년 지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본 고의 연구를 위해 확보한 자료 DB에서 해당 품목 생산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이 표에 포함 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실증 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예상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중견기업 이 배제되면서 사업 중단, 사업 축소 등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 영역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 황에 처한 중견기업이 빠르게 사업 전환을 하지 않 는 한 성과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성과 가 저하된다는 의미는 동 제도를 전후로 성과가 낮 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 제도로 인해 한 중견기업이 배제 대상이 되어 영업 이익률에서 3%를 실현했다고 하자. 동 제도로 인한 배제가 없던 (가상적인) 상황에서 영업이익률 5%라 면, 그 차이인 2% 포인트가 동 제도로 인한 성과 저

하이며 그것이 동 제도로 인한 인과적 의미의 성과 에 대한 영향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본의 구 성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정보와 세심한 자료 처 리가 필요하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 적인 제약으로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지만, 입수 가능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 하여 최대한 이상적 상황을 구현하여 분석하고자 노 력하였다.

-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의에 따라 중견기업만의 표본을 구성
- 중견기업은 적합업종 제도에서 수혜 대상이 아니라 배제 대상(규제 대상)이므로,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문제는 없으나, 정부가 적합업종 지정을 결정한 과정을 모형화할 수 있는 정보는 입수 불가함
-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특정 업종에서 배제 대상이 된 중견기업의 표본(처리 표본)의 구성 -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중견기업으로 그 기업의 주 요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업
- 상기 처리표본 내 각 중견기업에 대해서 적합업종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주요 생산 품목이 적 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다른 면에서는 최 대한 유사한 기업을 통제 표본으로 구성

본 연구에서는 KIS-VALUE의 기업 자료 DB를 이용하였다. KIS-VALUE에서 최초 추출된 자료는 23,812개 기업, 7개년(2007-2008년)의 구조로 된 기업-연도 단위로 166,684개 관찰치의 불균형 패널 자료(unbalanced panel data)이다. 여기에는 결측치도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 치들도 있다. 우선 총자산, 총부채, 총자기자본이 음 (-)인 연도-기업 관측치는 제거하였다. 연령을 해당 년도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한 후 1을 더하여 계산하 였는데, 연도별 연령 관찰치에서 음(-)의 값이 있는 기업은 해당 기업 관측치를 제거하였다.

〈표 2〉 2011년 적합업종 지정이 명확한 53개 업종

| 순번 | 품목          | 지정일   | 순번 | 품목         | 지정일   |
|----|-------------|-------|----|------------|-------|
| 1  | 골판지상자       | 9.27  | 31 | 기타플라스틱포장   | 12.13 |
| 2  | 금형(프레스)     | 9.27  | 32 | 냉각탑        | 12.13 |
| 3  | 금형(플라스틱)    | 9.27  | 33 | 냉동·냉장쇼케이스  | 12.13 |
| 4  | 기타인쇄물       | 9.27  | 34 | 다류(기타가공차)  | 12.13 |
| 5  | 기타자동차부품     | 9.27  | 35 | 다류(녹차)     | 12.13 |
| 6  | 떡(제조도매)     | 9.27  | 36 | 다류(홍차)     | 12.13 |
| 7  | 세탁비누        | 9.27  | 37 | 단무지        | 12.13 |
| 8  | 순대          | 9.27  | 38 | 도시락        | 12.13 |
| 9  | 아스콘         | 9.27  | 39 | 면류(국수)     | 12.13 |
| 10 | 장류(간장)      | 9.27  | 40 | 면류(냉면)     | 12.13 |
| 11 | 장류(고추장)     | 9.27  | 41 | 면류(당면)     | 12.13 |
| 12 | 장류(된장)      | 9.27  | 42 | 배전반        | 12.13 |
| 13 | 재생타이어       | 9.27  | 43 | 부동액        | 12.13 |
| 14 | 절연전선        | 9.27  | 44 | 비디오도어폰     | 12.13 |
| 15 | 탁주          | 9.27  | 45 | 수처리제       | 12.13 |
| 16 | LED등        | 11.4  | 46 | 아크용접기      | 12.13 |
| 17 | 기타안전유리      | 11.4  | 47 | 양금류        | 12.13 |
| 18 | 기타판유리가공품    | 11.4  | 48 | 옥수수원유(식용유) | 12.13 |
| 19 | 김           | 11.4  | 49 | 옥수수유(정제유)  | 12.13 |
| 20 | 김치          | 11.4  | 50 | 주차기        | 12.13 |
| 21 | 단조          | 11.4  | 51 | 판지상자및용기    | 12.13 |
| 22 | 두부          | 11.4  | 52 | 휴대용저장장치    | 12.13 |
| 23 | 레미콘         | 11.4  | 53 | 유기계면활성제    | 12.13 |
| 24 | 생석회         | 11.4  |    |            |       |
| 25 | 식빵(제조도매)    | 11.4  |    |            |       |
| 26 | 어묵          | 11.4  |    |            |       |
| 27 | 원두커피        | 11.4  |    |            |       |
| 28 | DVR         | 12.13 |    |            |       |
| 29 | 기타가공사       | 12.13 |    |            |       |
| 30 | 기타개폐및보호관련기기 | 12.13 |    |            |       |

다음으로 중견기업을 식별하고 추출한 방법을 논의하자. 중견기업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중견권이 종합하여 제시한 중견기업

기준이 본고의 분석을 위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표 1〉에 제시된 규모 기준 및 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표본에서 우선 금융·보험업(KSIC 대분류 코드 K)

을 제거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 및 공기업집단 소속사를 제거하였다.<sup>14)15)</sup> 규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각 대분류 산업마다 서로 다른 종업원 수, 매출액, 총자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3년 유예 기준도 고려한다. 한도 기준은 규모 기준에 비해 적용하기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또한, 한도 기준은 적용되는 즉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며 유예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연도-기업별로 파악했을 때, 동일 기업에 대해서도 연도마다 중견기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11년도에 적합 업종 제도가 시작되었으므로, 2011년 시점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살폈고, 그 시점에서 중견기업인 기업을 분석 대상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중견기업 표본에서 2011년 적합 업종 지정 제도에 의해 지정된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처리집단으로 포함시켰고, 각 처리 기업마다 중견기업 표본에서 KSIC 산업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면서 처리 기업의 2007-2011년 총자산 범위 내에 총자산이 포함되는 기업을 통제집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1개의 처리기업이 다수의 통제기업과 대응될 수도 있다.

결국 본고의 연구에서 처리집단에 속한 기업 수는 209개, 통제집단에 속한 기업 수는 88개이다. 중견기업만으로 범위를 좁히다 보니, 기업 수 측면에서 표본크기가 크지는 않은 편이다. 추정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크기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적합업종 제도의 처리에 노출된 기업을 찾아내어 처리표본을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사한 기업들로 통제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처리효과를 식별하는데 있

어 보다 중요하다. 이를 다시 연도-기업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처리집단의 관측치수는 1,450이고, 통제집단은 610이다. 연도는 2008-2013년까지 6개년이다. 2007년은 앞서 제시한 방식에 따라 ROA, ROE,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률 계산시 분모의 총자산 규모나 총매출액 규모 계산시 전년도 값과의 평균을 사용하므로 2007년 추정치가 나올 수 없다. 또한, 총자산, 총고정자산, 총매출액 등의 성장률 계산 시에도 2007년 추정치는 없다. 이에 2007년은 사실상 분석에서 배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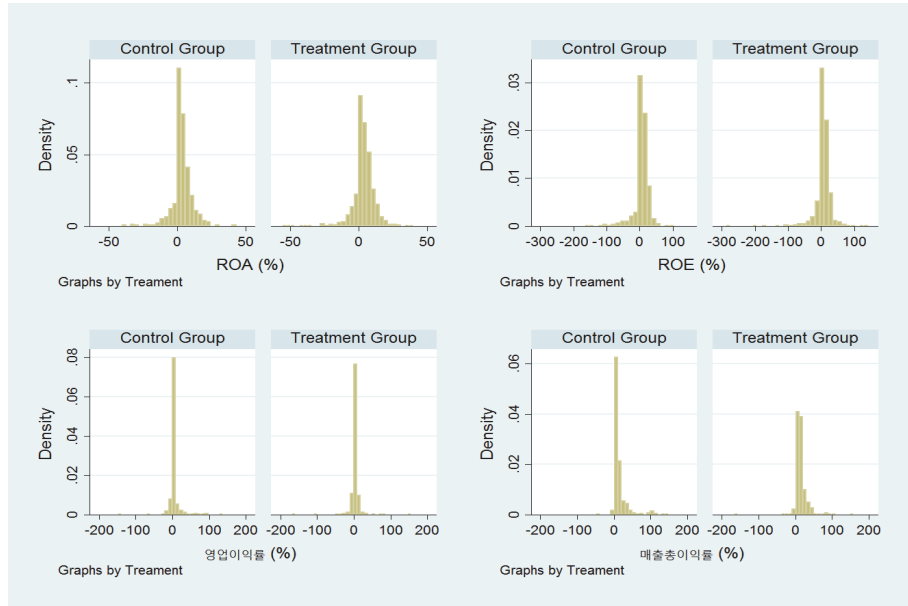
상기 과정을 거쳐 본고에서는 중견기업의 정의에 따라 최대한 중견기업 의미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표본을 한정하였고, 세세업종과 총자산을 통제하면서 처리기업과 통제기업을 세심하게 분류하고 구성하였다. 인과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면, 적합업종 제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는 기업이 처리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통제기업이 해당 처리기업과 동일 생산물을 생산하여 적합업종 제도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중견기업으로서 동일한 산업, 동일한 규모 등 유사한 기업이면서 적합업종 제도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지 않는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상기 기술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이하 각 분포 및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고, 이중차분 및 성향점수 방법론에 의하여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의 수익성, 성장성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추정한다. 애당초 DB에서 확보한 표본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아졌으나, 처리를 받은 기업과 처리 여부만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업의 대응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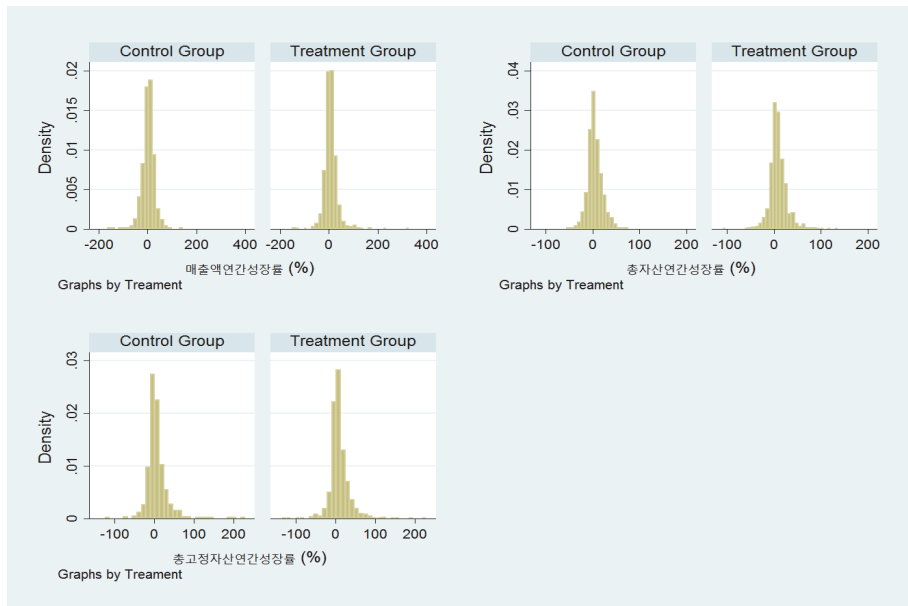
14)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GS, 부영, STX, 대우조선해양, 효성, 케이티앤지 등 매년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파악하였다(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5) 자료에서 제거된 공기업집단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 서울메트로, 충남농축산물유통센터관리공사 등이다.

(a) 수익성 지표



(b) 성장성 지표



〈그림 1〉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의 분포

본을 통제 표본으로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림 1〉은 각각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기업-연도 관찰치에 대한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의 히스토그램이다. 연도별로 히스토그램으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분포를 그려 비교해보는 것이 더욱 마땅하지만, 지면 관계상 기업-연도 단위 모든 관찰치로부터 아래 히스토그램 작성하였다. 히스토그램의 평균 간 차이만으로는 처리효과를 식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ROA의 분포를 보면 처리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여, 처리가 ROA를 높이는 인과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면 아니 된다. 아래 히스토그램은 2011년을 전후한 모든 연도별 관찰치로부터 그린 것일 뿐이다. 기타 RO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도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 히스토그램에서는 처리 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한편, 〈표 3〉은 2010-2012년 연도별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각 주요 변수의 요약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2009년, 2013년에 대한 요약 통계량도 있으나 지면 절약을 위해 여기서 생략하고 독자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

### 4.3 방법론

주요 분석에 앞서 처리효과의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처리 여부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정책의 '전후 비교(before-and-after analysis)'를 통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sup>16)</sup> 예를 들어, "신약의 효과(effect)"란 신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 신약을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차이가 아니다. 신

약의 효과는 "동일한 사람"으로 고정시키고 신약을 "투약한 경우의 반응"과 "투약하지 않은 경우의 반응"의 차이를 의미한다. 반응을  $Y$ 라고 할 때, 개체  $i$ 에 있어 신약의 효과는  $Y_i(1) - Y_i(0)$ 이다. 여기서 1은 투약(처리)을 의미하고, 0은 비투약(비처리)을 의미한다. 정확한 의미의 신약의 효과란 복제인간 2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신약을 투약한 개체에 대해서는 투약하지 않은 경우의 반응을 관찰할 수 없으며, 반대로 신약을 투약하지 않은 개체에 대해서는 신약을 투약한 경우의 반응을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관찰되지 않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반응을 통계적으로 복구(추정)해내는 것이 처리 효과 방법론의 최대 관건이다.

처리 효과 추정에 있어 가장 용이한 방법론이 외생적(강제적)이면서 무작위적으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통제된 실험을 행하여 그 결과 자료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는 이공계 분야에서나 가능하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러한 외생적이며 무작위적인 실험이 불가하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실험자료(experimental data)가 아닌 관찰된 자료(observational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하므로 매우 신중하고도 세심한 통계적 기법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DID, 성향점수 방법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DID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의해 일부 집단이 일률적인 영향을 받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적 상황에서 적합한 방법론이며, 성향점수 방법론은 처리 여부가 개체나 처리 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이들 방법론으로 통상 "조건부 평균 처리 효과(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인 아래 ATT를 추정한다. ATT는 처리를 받은 개체( $D_i = 1$ )에 한하여 (조건부) 평

16)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전후 비교가 처리효과가 될 수도 있다.



(표 3) 연도별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의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

|              | (a) 2010년 |        |        |         | (b) 2011년 |    |        |        | (c) 2012년 |        |    |        |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총자산 (십억원)    | 87        | 83.19  | 101.31 | 9.36    | 454.26    | 87 | 85.96  | 102.98 | 11.94     | 520.65 | 86 | 89.85  | 109.48 | 12.03   | 542.03 |
| 총자기자본 (십억원)  | 87        | 49.96  | 87.06  | 0.85    | 404.86    | 87 | 51.42  | 88.60  | 1.19      | 393.13 | 86 | 55.14  | 94.97  | 0.58    | 446.99 |
| 총부채 (십억원)    | 87        | 33.23  | 28.82  | 2.37    | 128.32    | 87 | 34.54  | 31.86  | 0.28      | 145.87 | 86 | 34.71  | 31.95  | 0.35    | 143.89 |
| 총매출액 (십억원)   | 87        | 114.38 | 102.36 | 16.07   | 589.28    | 87 | 125.22 | 116.74 | 7.81      | 628.53 | 86 | 124.42 | 118.24 | 7.94    | 579.35 |
| 연령 (년)       | 87        | 20.57  | 10.71  | 3.00    | 53.00     | 87 | 21.69  | 10.64  | 4.00      | 54.00  | 86 | 22.70  | 10.70  | 5.00    | 55.00  |
| ROA (%)      | 86        | 4.94   | 5.69   | -8.95   | 20.67     | 86 | 3.15   | 7.07   | -22.90    | 23.69  | 86 | 3.78   | 5.84   | -15.18  | 22.38  |
| ROE (%)      | 86        | 11.31  | 15.41  | -46.76  | 59.06     | 86 | 7.21   | 17.55  | -80.23    | 44.04  | 86 | 6.06   | 22.94  | -162.24 | 38.14  |
| 영업이익률 (%)    | 86        | 7.09   | 17.12  | -7.11   | 94.88     | 86 | 3.79   | 8.31   | -19.15    | 39.21  | 86 | 5.29   | 12.96  | -20.27  | 74.51  |
| 매출총이익률 (%)   | 86        | 16.74  | 23.40  | 0.52    | 143.16    | 86 | 13.63  | 15.21  | -5.25     | 100.03 | 86 | 15.69  | 20.99  | 0.42    | 106.58 |
| 총자산증가율 (%)   | 86        | 8.79   | 14.24  | -29.21  | 46.76     | 86 | 5.70   | 14.82  | -19.30    | 56.08  | 86 | 2.57   | 15.71  | -38.48  | 74.15  |
| 총매출증가율 (%)   | 86        | 15.79  | 23.71  | -49.87  | 143.19    | 86 | 4.30   | 26.59  | -132.83   | 45.48  | 86 | -1.02  | 18.71  | -50.85  | 65.12  |
| 총고정자산증가율 (%) | 86        | 6.00   | 24.18  | -116.25 | 88.83     | 86 | 8.38   | 28.15  | -36.14    | 149.01 | 86 | 6.39   | 26.27  | -36.58  | 197.66 |

|              | (a) 2010년 |        |        |         | (b) 2011년 |    |        |        | (c) 2012년 |        |    |        |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총자산 (십억원)    | 87        | 83.19  | 101.31 | 9.36    | 454.26    | 87 | 85.96  | 102.98 | 11.94     | 520.65 | 86 | 89.85  | 109.48 | 12.03   | 542.03 |
| 총자기자본 (십억원)  | 87        | 49.96  | 87.06  | 0.85    | 404.86    | 87 | 51.42  | 88.60  | 1.19      | 393.13 | 86 | 55.14  | 94.97  | 0.58    | 446.99 |
| 총부채 (십억원)    | 87        | 33.23  | 28.82  | 2.37    | 128.32    | 87 | 34.54  | 31.86  | 0.28      | 145.87 | 86 | 34.71  | 31.95  | 0.35    | 143.89 |
| 총매출액 (십억원)   | 87        | 114.38 | 102.36 | 16.07   | 589.28    | 87 | 125.22 | 116.74 | 7.81      | 628.53 | 86 | 124.42 | 118.24 | 7.94    | 579.35 |
| 연령 (년)       | 87        | 20.57  | 10.71  | 3.00    | 53.00     | 87 | 21.69  | 10.64  | 4.00      | 54.00  | 86 | 22.70  | 10.70  | 5.00    | 55.00  |
| ROA (%)      | 86        | 4.94   | 5.69   | -8.95   | 20.67     | 86 | 3.15   | 7.07   | -22.90    | 23.69  | 86 | 3.78   | 5.84   | -15.18  | 22.38  |
| ROE (%)      | 86        | 11.31  | 15.41  | -46.76  | 59.06     | 86 | 7.21   | 17.55  | -80.23    | 44.04  | 86 | 6.06   | 22.94  | -162.24 | 38.14  |
| 영업이익률 (%)    | 86        | 7.09   | 17.12  | -7.11   | 94.88     | 86 | 3.79   | 8.31   | -19.15    | 39.21  | 86 | 5.29   | 12.96  | -20.27  | 74.51  |
| 매출총이익률 (%)   | 86        | 16.74  | 23.40  | 0.52    | 143.16    | 86 | 13.63  | 15.21  | -5.25     | 100.03 | 86 | 15.69  | 20.99  | 0.42    | 106.58 |
| 총자산증가율 (%)   | 86        | 8.79   | 14.24  | -29.21  | 46.76     | 86 | 5.70   | 14.82  | -19.30    | 56.08  | 86 | 2.57   | 15.71  | -38.48  | 74.15  |
| 총매출증가율 (%)   | 86        | 15.79  | 23.71  | -49.87  | 143.19    | 86 | 4.30   | 26.59  | -132.83   | 45.48  | 86 | -1.02  | 18.71  | -50.85  | 65.12  |
| 총고정자산증가율 (%) | 86        | 6.00   | 24.18  | -116.25 | 88.83     | 86 | 8.38   | 28.15  | -36.14    | 149.01 | 86 | 6.39   | 26.27  | -36.58  | 197.66 |

|              | (a) 2010년 |        |        |         | (b) 2011년 |    |        |        | (c) 2012년 |        |    |        |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총자산 (십억원)    | 87        | 83.19  | 101.31 | 9.36    | 454.26    | 87 | 85.96  | 102.98 | 11.94     | 520.65 | 86 | 89.85  | 109.48 | 12.03   | 542.03 |
| 총자기자본 (십억원)  | 87        | 49.96  | 87.06  | 0.85    | 404.86    | 87 | 51.42  | 88.60  | 1.19      | 393.13 | 86 | 55.14  | 94.97  | 0.58    | 446.99 |
| 총부채 (십억원)    | 87        | 33.23  | 28.82  | 2.37    | 128.32    | 87 | 34.54  | 31.86  | 0.28      | 145.87 | 86 | 34.71  | 31.95  | 0.35    | 143.89 |
| 총매출액 (십억원)   | 87        | 114.38 | 102.36 | 16.07   | 589.28    | 87 | 125.22 | 116.74 | 7.81      | 628.53 | 86 | 124.42 | 118.24 | 7.94    | 579.35 |
| 연령 (년)       | 87        | 20.57  | 10.71  | 3.00    | 53.00     | 87 | 21.69  | 10.64  | 4.00      | 54.00  | 86 | 22.70  | 10.70  | 5.00    | 55.00  |
| ROA (%)      | 86        | 4.94   | 5.69   | -8.95   | 20.67     | 86 | 3.15   | 7.07   | -22.90    | 23.69  | 86 | 3.78   | 5.84   | -15.18  | 22.38  |
| ROE (%)      | 86        | 11.31  | 15.41  | -46.76  | 59.06     | 86 | 7.21   | 17.55  | -80.23    | 44.04  | 86 | 6.06   | 22.94  | -162.24 | 38.14  |
| 영업이익률 (%)    | 86        | 7.09   | 17.12  | -7.11   | 94.88     | 86 | 3.79   | 8.31   | -19.15    | 39.21  | 86 | 5.29   | 12.96  | -20.27  | 74.51  |
| 매출총이익률 (%)   | 86        | 16.74  | 23.40  | 0.52    | 143.16    | 86 | 13.63  | 15.21  | -5.25     | 100.03 | 86 | 15.69  | 20.99  | 0.42    | 106.58 |
| 총자산증가율 (%)   | 86        | 8.79   | 14.24  | -29.21  | 46.76     | 86 | 5.70   | 14.82  | -19.30    | 56.08  | 86 | 2.57   | 15.71  | -38.48  | 74.15  |
| 총매출증가율 (%)   | 86        | 15.79  | 23.71  | -49.87  | 143.19    | 86 | 4.30   | 26.59  | -132.83   | 45.48  | 86 | -1.02  | 18.71  | -50.85  | 65.12  |
| 총고정자산증가율 (%) | 86        | 6.00   | 24.18  | -116.25 | 88.83     | 86 | 8.38   | 28.15  | -36.14    | 149.01 | 86 | 6.39   | 26.27  | -36.58  | 197.66 |

균적인 처리 효과를 의미한다.

$$ATT = E(Y_i(1) - Y_i(0) | D_i = 1)$$

본고에서는 DID, 성향점수 기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이 중견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중견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의한 배제 여부는 자연실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DID보다는 성향점수 기법에 의한 분석이 더욱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표본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적절히 구성한 상황에서 적합업종 제도 도입 자체는 하나의 자연실험이므로 각 개체별 이질성을 잘 통제하면 DID 방식으로도 처리효과를 상당 정도 추정해 낼 수 있다. DID 분석은 아래 패널 선형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쉽게 가능하다.

$$y_{i,t} = \alpha + \beta D_i + \gamma T_t + \delta(D_i \times T_t) + z_{i,t}'\xi + \epsilon_{i,t}$$

상기 식에서  $y_{i,t}$ 는 성과 지표로 앞서 제시한 수익성 지표인 ROA, ROE,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률 또는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 총매출증가율, 총고정자산증가율 등을 의미하며, 각 지표마다 별도의 분석을 하게 된다.  $D_i$ 는 적합업종 지정 처리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지정으로 규제 대상으로 노출된 중견기업이면 1(즉, 처리집단 소속 기업), 아니면 0(통제집단 소속 기업)을 나타낸다.  $T_t$ 는 2011년 이전이면 0, 이후이면 1인데, 2011년은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으로 간주하여 2011년 관찰치를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국한하다 보니 표본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2011년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물론, 2011년 시점은 적합업종 제도가 시작하지 않은 시기로 간주하여  $T_{2011} = 0$ 으로 부여된다. 계수  $\delta$ 는 본고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적합업종 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z_{i,t}$ 는 기타 통제해야 할 변수를 포함한다. 세세분류 산업 더미, 연도 더미, 로그 총자산, 로그 부채비율, 기업 연령 및 그 제곱 등의 변수를 통제하였는데, 이들 통제 변수는 이후 성향점수 분석에서는 1단계 성향점수에 대한 설명변수로도 이용 가능하다.

한편, 2011년 적합업종의 선정(지정)은 강제적이며 무작위적인 할당이 아니며 정부(동반위)가 기업, 산업, 업종, 거시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건의를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적합업종 여부를 선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는 결코 무작위적이고 강제적인 처리가 아니다. 그러한 적합업종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를 통제하고 제거해야 적합업종 선정 여부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 할당이 된다.<sup>17)</sup> 이를 구현하는 주요 방법론 중 하나가 성향점수 방법론이다. IV 방법론이나 로이 모형이 아닌 처리효과 방법론에서는 종종 “selection on observables”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처리 여부가 관찰되는 변수에 의해서만 체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성향점수 기법에서는 selection on observables는 아래와 같은 ‘비교락성(unconfoundedness)’으로 기술가능하다. 성향점수 기법에 의한 분석의 타당성을 아래의 비교락성 조건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처리  $D_i$ 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가능한 요인  $\mathbf{x}$ 가 충분히 통제되고 그

17) 정부의 선정 과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모형화하여 고려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무작위성을 갖추게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것이 성향점수  $p(\mathbf{x})$ 로 집약되어 그 성향점수만 동일하다면 독립성이 성립하느냐의 여부이다.

$$D_i \perp (Y_i(1), Y_i(0)) \mid p(\mathbf{x})$$

만일, 미관측 요인  $v$ 까지 통제되어야 독립성이 성립한다면(selection on unobservables) 성향점수 기법도 편의를 갖는다. 하지만, selection on observables/selection on unobservables 여부를 밝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 수단도 없다. 상기 selection on observables 전제 하에 아래의 ATT가 도출되며, 그 표준오차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계산된다.

$$ATT = \frac{\sum_{i \in T} \left\{ y_i - \sum_{i \in C} y_j K\left(\frac{p_j - p_i}{b}\right) \right\}}{N^T}$$

상기 ATT에서  $y$ 는 종속변수로서 반응(성과),  $T$ ,  $C$ 는 각각 처리집단, 통제집단을 나타내며,  $p_i$ 는 기업  $i$ 의 성향점수(1단계로 로짓 모형으로 추정),  $K(\cdot)$ 는 핵함수(kernel function),  $b$ 는 핵함수에 설정되는 구간별 길이(bandwidth)로 본고에서는 0.06을 선택하였다.  $N^T$ 는 처리집단의 표본크기이다. 이후 분석에서는 상기 ATT 및 그 SE(표준오차)와 t-값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이 중견기업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친 처리효과를 도출하고 논의한다.

#### 4.4 실증 분석 결과

##### 4.4.1 시계열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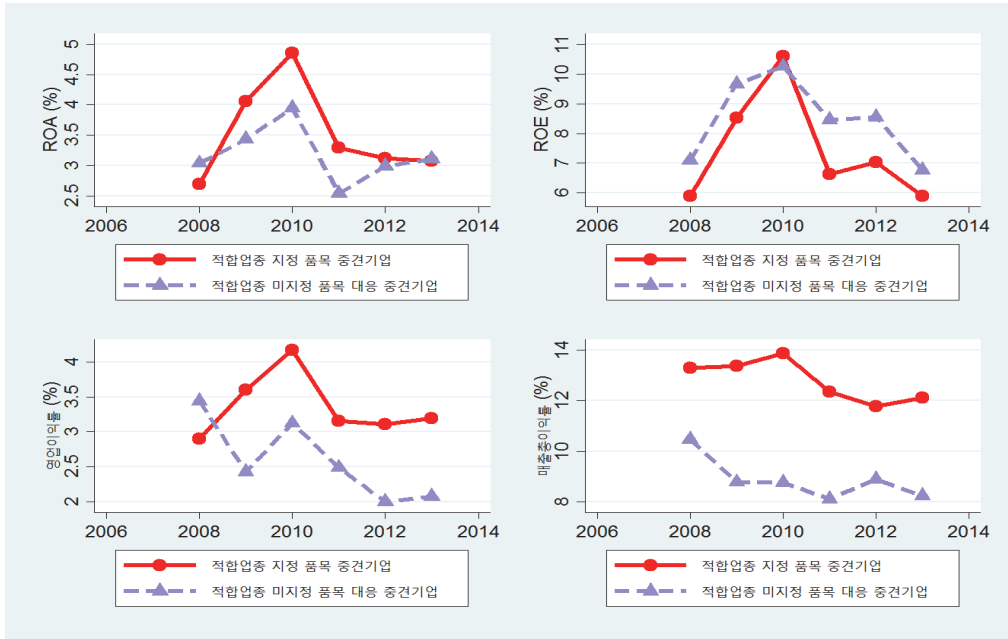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첫 번째로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피

해에 노출된 중견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견기업의 평균적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다. 처리 표본 및 통제 표본 각각에 대해서 ROA, ROE,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 및 총자산증가율, 총매출증가율, 총고정자산증가율의 성장성 지표의 2011년 전후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해보았다. 그 결과를 <그림 2> 및 <그림 3>에 나타냈으며, 그림은 각 연도마다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값은 극단치에 평균보다 강건하다. 시계열 추이는 기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를 육안으로 보고 적합 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에 미친 효과가 어떠한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시계열 그림으로부터 각 집단의 전후 차이의 차이를 다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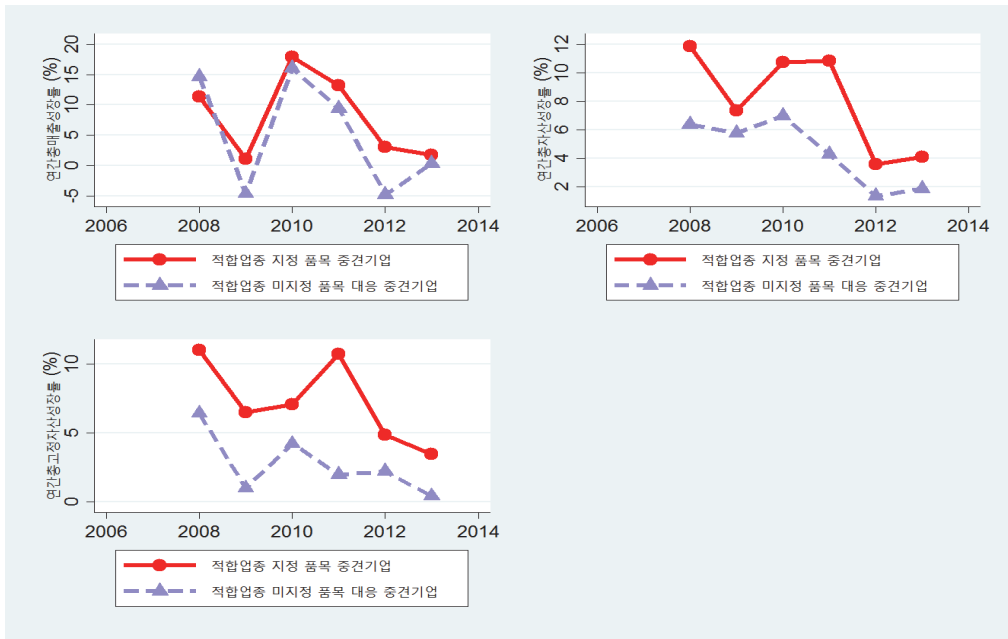
수익성 지표의 추이 먼저 보자. ROA, ROE는 양 집단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2010년이 피크였고 그 이후 크게 하락하였다. 하락한 폭은 처리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커 보인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총이익률은 전체적으로 처리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수준이다. 역시 2010년에 피크인 양상을 보이지만 매출총이익률에서 통제집단은 예외적이다. 2011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평균수준이 하락한 폭을 보면 양 집단이 유사해 보인다.

다음으로 성장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자. 총매출성장률은 양 집단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총자산성장률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처리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11년을 전후한 하락 폭은 양 집단 간에 유사해 보인다. 총고정자산증가율에서는 전체적으로 처리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1년을 전후한 하락 폭은 처리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다소 커 보인다.

이상의 지표에서 2011년을 전후하여 처리집단의 평균수준 하락 폭이 통제집단의 평균 수준 하락폭보



〈그림 2〉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중견기업의 수익성 지표 추이



〈그림 3〉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중견기업의 성장성 지표 추이

다 크다면, 대략 적합업종 제도 시행이라는 처리가 중견기업의 해당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시계열 추이는 다른 변수가 통제되지 못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 4.4.2 DID 분석 결과

다음으로 이중차분 추정치를 얻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표 4>, <표 5>에 추정 결과를 제

시하였다. FE(고정효과 추정), RE(확률효과 추정)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는데, 각 추정 기법의 차이에 따른 추정치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통상 FE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FE가 회귀분석 식의 오차항에 관한 잔여 내생성 문제에 가장 견고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시간불변 미관측 이질성은 통제되는 것이다. 추정 결과는 FE와 RE간 차이가 크지 않아 어느 계수를 받아들여도 무방해 보인다.

각 지표마다 추정 결과를 보자. 중소기업 적합업

<표 4> 중견기업 수익성 지표에 대한 DID 분석 결과

|                     | ROA (%)              |                        | ROE (%)               |                        | 영업이익률 (%)             |                     | 매출총이익률 (%)            |                      |
|---------------------|----------------------|------------------------|-----------------------|------------------------|-----------------------|---------------------|-----------------------|----------------------|
|                     | FE                   | RE                     | FE                    | RE                     | FE                    | RE                  | FE                    | RE                   |
| $D_i$               |                      | 1.2073<br>(0.9976)     |                       | 3.8745*<br>(2.2293)    |                       | 0.0096<br>(1.4029)  |                       | -1.4809<br>(2.3984)  |
| $T_t$               |                      | -0.8178<br>(0.6056)    |                       | -4.3948**<br>(2.2093)  |                       | 0.7011<br>(1.1053)  |                       | 1.7724<br>(1.2288)   |
| $D_i \times T_t$    | 0.2398<br>(0.6495)   | 0.2708<br>(0.6236)     | 1.7619<br>(2.5770)    | 2.4387<br>(2.4114)     | -1.2676<br>(1.0962)   | -1.1085<br>(1.1620) | -2.3210**<br>(1.0821) | -2.1254*<br>(1.1549) |
| 연령                  | -0.0446<br>(0.2338)  | 0.0989<br>(0.0676)     | -0.6692<br>(0.8695)   | 0.2594<br>(0.1729)     | 0.3427<br>(0.6605)    | 0.1112<br>(0.1566)  | -0.0598<br>(0.5775)   | -0.1652<br>(0.1605)  |
| 연령 <sup>2</sup>     | 0.0016<br>(0.0031)   | -0.0013<br>(0.0009)    | 0.0068<br>(0.0103)    | -0.0040*<br>(0.0023)   | 0.0060<br>(0.0069)    | -0.0012<br>(0.0018) | 0.0062<br>(0.0062)    | 0.0017<br>(0.0022)   |
| 로그 총자산              | -1.2187<br>(1.4515)  | 0.0417<br>(0.5689)     | 2.6602<br>(4.3617)    | 1.2672<br>(1.3396)     | -3.8809**<br>(1.9347) | 0.4526<br>(0.5865)  | -1.1811<br>(1.1896)   | 0.6808<br>(0.8035)   |
| 로그 부채비율             | -2.5292*<br>(1.3670) | -3.1385***<br>(0.9399) | -6.6205**<br>(2.8271) | -5.2802***<br>(1.5202) | 2.5158<br>(3.3509)    | -2.5992<br>(2.8033) | 0.2923<br>(2.7909)    | -2.1159<br>(2.5821)  |
| 연도더미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 산업더미<br>(세계분류)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 N                   | 1,737                | 1,737                  | 1,737                 | 1,737                  | 1,735                 | 1,735               | 1,735                 | 1,735                |
| R <sup>2</sup>      | 0.0355               |                        | 0.0289                |                        | 0.0189                |                     | 0.0174                |                      |
| adj.-R <sup>2</sup> | 0.0305               |                        | 0.0239                |                        | 0.0138                |                     | 0.0122                |                      |
| #(firms)            | 297                  | 297                    | 297                   | 297                    | 297                   | 297                 | 297                   | 297                  |
| F                   | 3.941                |                        | 3.575                 |                        | 3.085                 |                     | 6.222                 |                      |
| [p-값]               | [0.0203]             |                        | [0.0277]              |                        | [0.0435]              |                     | [0.0044]              |                      |

(표 5) 중견기업 성장성 지표에 대한 DID 분석 결과

|                     | 총매출증가율 (%)             |                       | 총자산증가율 (%)             |                        | 총고정자산증가율 (%)           |                        |
|---------------------|------------------------|-----------------------|------------------------|------------------------|------------------------|------------------------|
|                     | FE                     | RE                    | FE                     | RE                     | FE                     | RE                     |
| $D_i$               |                        | 3.7577*<br>(2.2782)   |                        | 7.2370***<br>(1.8001)  |                        | 5.5841**<br>(2.2538)   |
| $T_t$               |                        | -4.6068<br>(3.3719)   |                        | -3.6918**<br>(1.6699)  |                        | -8.7078***<br>(2.8437) |
| $D_i \times T_t$    | -3.1319<br>(2.7041)    | -1.4111<br>(2.6728)   | -5.5656***<br>(1.6349) | -4.2688***<br>(1.6006) | -2.5733<br>(2.5773)    | -1.4874<br>(2.5370)    |
| 연령                  | -3.6952***<br>(0.8408) | -0.4598**<br>(0.1845) | -2.4891***<br>(0.5714) | -0.1287<br>(0.1038)    | -4.1147***<br>(0.9792) | -0.0259<br>(0.1165)    |
| 연령 <sup>2</sup>     | 0.0319***<br>(0.0114)  | 0.0057**<br>(0.0026)  | 0.0198**<br>(0.0080)   | 0.0015<br>(0.0016)     | 0.0181*<br>(0.0109)    | 0.0000<br>(0.0015)     |
| 로그 총자산              | 4.0424<br>(4.5091)     | 1.8759**<br>(0.9240)  | 2.7493<br>(3.4222)     | 0.8855<br>(0.8369)     | 2.5702<br>(5.5147)     | 0.1101<br>(1.1074)     |
| 로그 부채비율             | 11.1322**<br>(4.8401)  | 5.9140***<br>(2.0847) | 7.0238***<br>(2.6458)  | 2.6103<br>(1.6445)     | 0.9547<br>(3.8870)     | -0.2410<br>(1.4564)    |
| 연도더미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 산업더미<br>(세계분류)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 N                   | 1,735                  | 1,735                 | 1,737                  | 1,737                  | 1,737                  | 1,737                  |
| R <sup>2</sup>      | 0.0865                 |                       | 0.0898                 |                        | 0.0456                 |                        |
| adj.-R <sup>2</sup> | 0.0818                 |                       | 0.0851                 |                        | 0.0407                 |                        |
| #(firms)            | 297                    | 297                   | 297                    | 297                    | 297                    | 297                    |
| F                   | 16.18                  |                       | 15.12                  |                        | 8.013                  |                        |
| [p-값]               | [0.0001]               |                       | [0.0002]               |                        | [0.0018]               |                        |

중 제도가 중견기업의 ROA, ROE, 영업이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FE, RE 추정 모두에서 DID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t-값이 1에 못 미쳐 부호 자체를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한편, 이를 두고 영향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결과 자체에 순응하는 해석은 DID 분석 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ROA, ROE, 영업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출총이익률에서는 DID 계수가 FE, RE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음(-)

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 매출총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 계수 추정치가 약 2.1-2.3이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견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을 2.1-2.3% 포인트 정도 저하시키는 효과를 미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음으로 성장성 지표를 보자. 세가지 중 매출액 증가율과 총고정자산증가율에 대한 적합업종 제도의 중견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어 보인다. DID 추정치가 FE, RE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하지

만, 총자산증가율 분석에서는 DID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며 음(-)으로 추정된다.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을 약 5% 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해석가능한 계수로 추정된다.

그러한 결과를 유발한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첫째로, 중견기업 스스로 자산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으로 취급되고자 하는 노력이었을 수도 있고, 둘째로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자산 증가 속도를 조절했을 수도 있다. 셋째, 영업성과의 악화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중견기업의 영업성과가 실제로 악화되었을 수 있다. 물론, 앞서 수익성 지표에는 그러한 영업 상황의 악화에 대한 견고한 증거를 얻지는 못하였고, 다만, 매출총이익률이 악화된 상황은 DID 추정으로 포착되었다.

한편, 총자산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것이 반드시 자산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총자산 수준 자체는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총자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총자산증가율까지 낮아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다. 지면 관계상 분석 결과를 모두 제시하지는 않지만, 로그-총자산을 종속변수로 하여 DID 추정을 위한 상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ID 계수 추정치는 약 -0.02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 따라서, 적합업종 제도는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그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강하다(FE는 양측 1%에서 유의, RE는 양측 5%에서 유의). 따라서,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 총자산을 2% 정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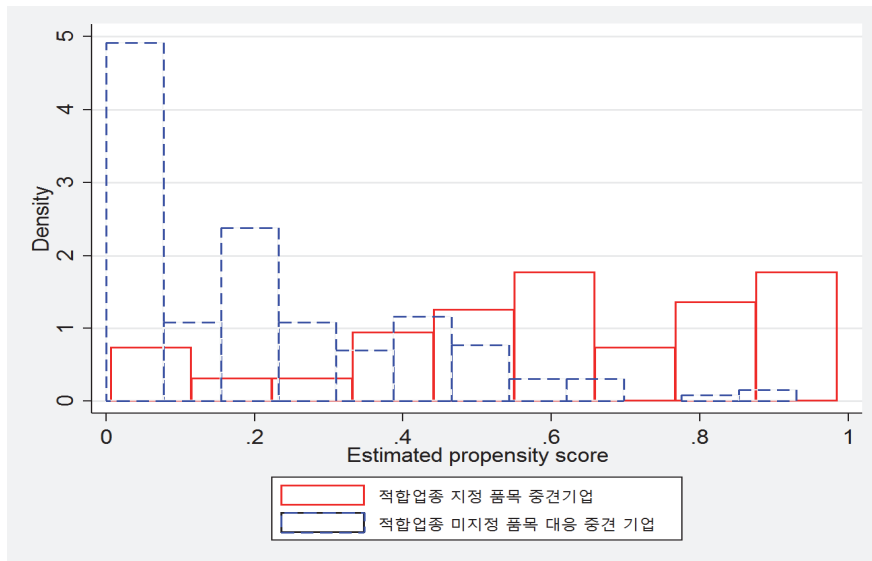
#### 4.4.3 성향점수 기법 분석

성향점수 방법론에 의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성향점수 기법에 의한 ATT가 제대로 추정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가 추정된 성향점수가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충분히 큰 영역에서 중복하여 겹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balancing check). 다음 <그림 4>로 볼 때, 두 집단 간에 적절한 'balancing'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집단은 1 가까이로 치우치고, 통제집단은 0 가까이로 치우치면서 [0,1] 구간 전체에서 공통 범위(common support)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표 6>은 성향점수 추정을 위해 1단계로 사용한 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로짓모형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 관찰되는 요소로 앞서 DID 분석에서 통제변수  $z$ 로 사용한 변수들을 사용, 즉 산업(세세분류), 연도, 연령, 로그 총자산, 로그 부채비율을 로짓모형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산업 차이가 적합업종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alancing을 위해 공통 영역에서 추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실제 추정에 사용된 표본 크기는 256이다. 일반적으로 성향점수 기법에서 로짓모형 추정 결과 자체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별로 없다.

성향점수 기법의 중요한 가정은 앞서와 같이 로짓모형 등으로 추정된 성향점수만 같다면, 나머지 처리 여부( $D=1$  or  $D=0$ )는 사실상 무작위적이라는 것이다. 즉,  $(Y_i(1), Y_i(0)) \perp D_i | p(\mathbf{x}_i)$ . 이에 성향점수를 통제하여 그 효과를 제거한 후, 두 집단 간 차이를 계산한 것이 ATT이다. 표준오차는 앞서 언급했듯이, 부스트래핑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하 <표 7>에 중견기업 수익성 지표 및 성장성 지표 각각에 대한 ATT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



〈그림 4〉 로짓 모형에 의한 성향 점수 추정치의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에서의 분포

〈표 6〉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로짓 모형 추정 결과

|                 | 추정치       | 표준오차   | z-값   |
|-----------------|-----------|--------|-------|
| 연령              | 0.0007    | 0.0454 | 0.02  |
| 연령 <sup>2</sup> | -0.0001   | 0.0007 | -0.18 |
| 로그 총자산          | 1.7760*** | 0.3985 | 4.46  |
| 로그 부채비율         | 1.7117*** | 0.4714 | 3.63  |
| 산업더미            | 포함        | -      | -     |
| 연도더미            | 포함        | -      | -     |

N = 256  
Pseudo R<sup>2</sup> = 0.3265  
 $\chi^2(30) = 107.58$  [p=0.0000]

석 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는 통계적 유의성은 약한 편이다. 총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측 10%에서 유의하다. 또한, 정확하게는 후자의 양측 유의확률은 10%를 약간 넘는다. 따라서, 성향점수 기법에 의한 분석

결과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 10% 유의수준에서는 총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중견기업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에 대한 성향점수 기법에 의한 ATT 추정 결과

|              | #(treat) | #(control) | ATT      | SE    | z-값    |
|--------------|----------|------------|----------|-------|--------|
| ROA (%)      | 88       | 162        | -0.752   | 1.802 | -0.417 |
| ROE (%)      | 88       | 162        | -2.359   | 7.564 | -0.312 |
| 영업이익률 (%)    | 88       | 162        | 2.260    | 2.066 | 1.094  |
| 매출총이익률 (%)   | 88       | 162        | -7.816   | 9.059 | -0.863 |
| 총매출증가율 (%)   | 88       | 162        | -9.872*  | 5.607 | -1.753 |
| 총자산증가율 (%)   | 88       | 162        | -11.803* | 7.228 | -1.633 |
| 총고정자산증가율 (%) | 88       | 162        | -7.329   | 6.961 | -1.053 |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에 미친 피해가 있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의 수익성 지표로 ROA, ROE,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률을 성장성 지표로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고정자산증가율의 6가지 지표를 대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크게 시계열 평균 추이 분석, DID 분석, 성향점수 기법에 의한 분석의 3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혜택이 아닌 배제 대상이 된 중견기업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을 매칭하여 통제집단 삼아 분석한 결과, “인과적 관점(causal relationship perspective)”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강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DID 분석에서는 매출총이익률이 저하된 결과와 총자산증가율 및 총자산이 감소되었다는 근거를 발견하였다.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편이다. 성향점수 기법에서는 양측 10%의 유의수준을 인정한다면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DID 분석과 성향점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중견기업 총자산증가율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적합업종 제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의 이익단체인 중견련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성장을 멈출 것이라고 했고,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고의 총자산증가율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DID 분석은 총자산증가율 뿐만 아니라 총자산 자체도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총자산의 감소는 중견기업의 성장 중단,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 영업 성과의 악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본고의 분석으로는 어떤 원인인지 밝혀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한 중견기업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도 좋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중견기업에 나타날 수 있음을 정책 결정자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의 결과를 인과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회귀분석과는 달리 처리효과 방법론을 최

대한 준용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이표본 비교나 회귀분석으로는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밝혀 내기 어렵다. 특히 본고와 같이 적합업종 제도 같은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자의 지원 의사 또는 집행자의 선별 과정에 기인하는 내생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회귀분석 및 IV 추정이 아닌 통상적인 최소제곱법(OLS) 추정에 의한 경우 내생성 편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잠재적 내생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러한 내생성이 결과를 주도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노력으로서 DID 및 성향점수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본고의 방법론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고의 방법론에 의한 분석과 결과 해석이 일반적인 복수표본 비교 분석(t-test, Wilcoxon test)이나 회귀모형에 대한 LS 추정에 의한 판단보다는 낫다고 판단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중견기업의 성장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하여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안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중견기업의 성장까지 도모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고의 분석은 적합업종 제도가 과연 사회 전체적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 제도의 직접적 비용 측면으로는 중견기업의 피해와 대기업의 피해를 들 수가 있고, 과연 중견기업의 피해가 실재했는가를 실증분석으로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그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견기업의 피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책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분석이다. 대기업의 피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기업은 적합업종 제도로 인한 영업성과 악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영업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이미 기업집단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어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적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결국, 본고에서는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규제 및 배제 대상이 되어 버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처리 효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그것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가 모든 지표에서 견고하고 강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총자산증가율을 감소시킨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중견련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본고에서는 정책에 따른 편익이 아닌 비용에 집중하였다. 통상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고에서는 정책에 따라 배제 대상이 된 중견기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주로 편익에 집중된 기존 연구와 차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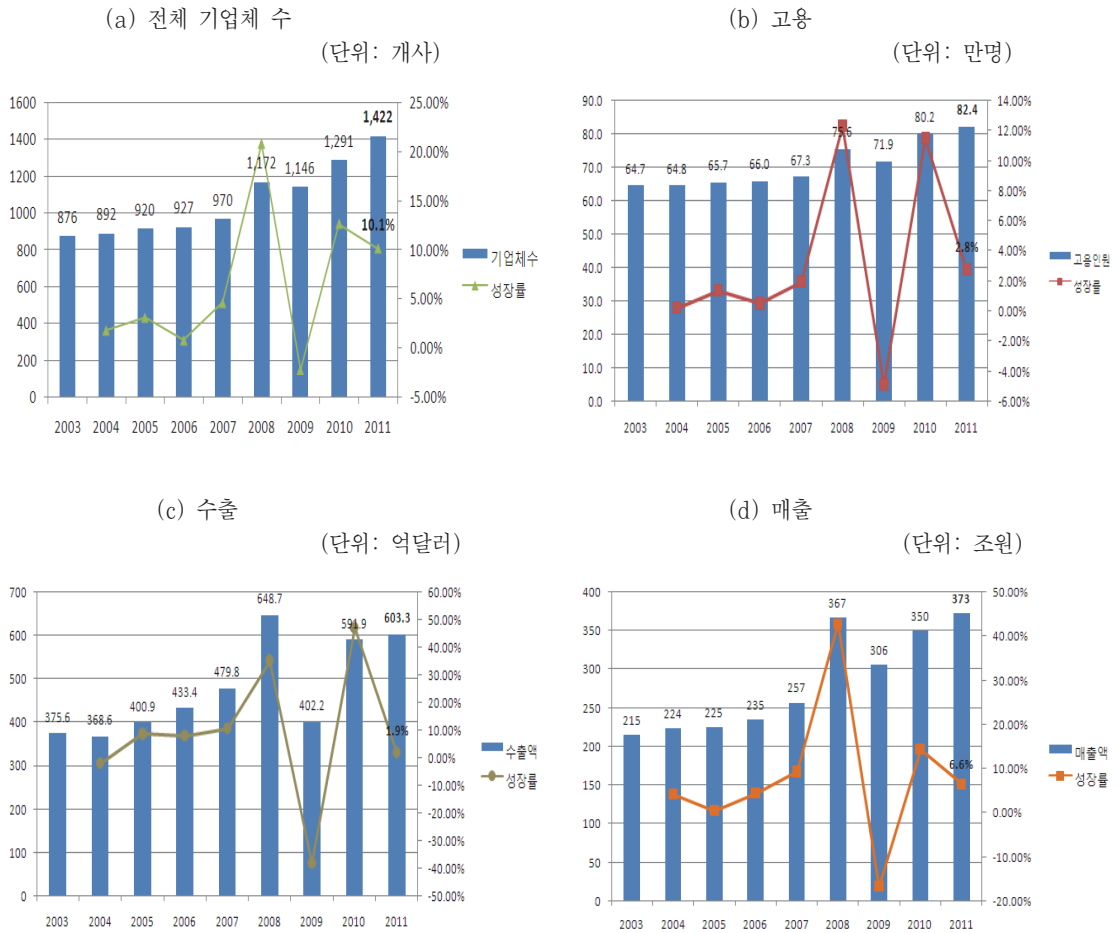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강창동 · 신건철 · 장재남(2012),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17(5), 1-23.
- 고윤석 · 김병진 · 강성욱(2012), “중소기업 적합업종과의

- 동반성장 방안.”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2년 4월, 153-155.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 김갑곤(199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종(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 토론회 발표자료.
- 김영수(2011), 고유업종으로 보호받은 382개 중소기업 경영지표 비교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 김은경·최용환(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평가, 경기개발연구원.
- 김은자(1998),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김필현(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방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동반성장 이슈시리즈(4).
- 신기룡(201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의섭(1996), “중소기업 역할변화와 고유업종 정책,” **명지대학교 경제연구**, 13, 195-207.
- 유주선(2013),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프랜차이즈 산업 등의 규제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법연구**, 12(1), 107-125.
- 유진수(1996),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국제경쟁력에 미친 효과분석,” **중소기업연구**, 34, 173-190.
- 이선화(201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12-08**.
- 이윤보·이동주(2004),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6(1), 75-98.
- 이혁우(2013),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교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사회과학연구**, 24(1), 331-353.
- 조동근(2011a),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KDI, **나라경제인사이트**, 12월호.
- 조동근(2011b), 시대역행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경총, 경영계**, 78.
- 전극수(2014),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집**, 18(3), 149-172.
- 전승우(2013),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발표회 자료(정의당 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지식경제부(2012), 2011년도 중견기업 통계 조사 결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침범임을 다시 한번 입증, 보도자료, (10.29.)
-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1a), 중견기업 정의에 따른 법제 정비 건의안.
-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1b),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관련 건의사항
- 황인학(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11-08**.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winwingrowth.or.kr>
-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ahpek.or.kr>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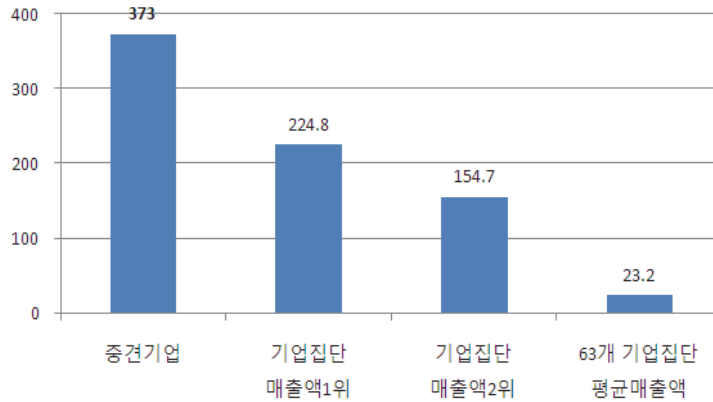
〈그림 A.1〉 중견기업 현황 및 경영 상황



출처: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그림 A.2〉 중견기업과 대기업 매출 규모 비교 (2011년 기준)

(단위: 조원)



출처: 2011년 당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표 A.1〉 2011년 중견기업 평균 영업 성과 및 고용

| 주요 지표  | 전산업       |              |
|--------|-----------|--------------|
|        | 전산업       | 제조업          |
| 평균매출액  | 2,706억원   | 4,277억원      |
| 평균수출액  | 8,800만 달러 | 1억 2,200만 달러 |
| 평균종사자수 | 580명      | 673명         |
| 평균 업력  | 23.04년    | 27.80년       |

출처: 2011년 당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표 A.2〉 중견기업이 제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취해지고 있음
-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선정 결과를 볼 때 중견기업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견기업은 동 제도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규모를 축소시켜 거꾸로 중소기업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를 퇴행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중견기업을 대기업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함
  - 중견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요청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대기업의 기준이 모호:
  - 대기업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음
  - 제1차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보면 사업이양 품목은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 기준
  - 반면, 진입자제와 확장자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황
  - 명확한 기준 없이 사안별로 대기업 기준을 검토함에 따라 중견기업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 특히 중소기업에서 출발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 업종 품목을 주 생산업종으로 삼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갖 벗어난 기업들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예시: 설탕식품)
- 중견기업은 이제 막 중소기업 범위를 졸업한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오히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우호적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상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동 제도는 사업 축소를 권고하거나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중견기업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중견기업의 수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큼
  - 우량 중소기업들은 능력이 있어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회가 있어도 기업을 키우지 않고 성장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됨
  -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수는 계속 감소하고 중소기업만 늘어날 수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며,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것
  -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경쟁 제한적 정책이며 결국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는 반시장경제적 정책임
  -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들은 더욱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경쟁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 후생은 악화될 것임
  - 중소기업만 생산하도록 한정할 경우 자본의 한계로 인해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어려우며 그로인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해외시장개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중소기업의 모럴헤저드 사례도 있음
  - 시장점유율에서 중소기업이 1위이고, 2, 3위가 중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길 신청하여 해당 시장에서 독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련 기업 당사자간의 자율 합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성 있는 행정조치 효과가 있어 향후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는 관련 기업의 비용을 유발
  - 확장자제, 진입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사업철수
- 실무위원회 또는 조정협의체에 중견기업 관련 인사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의견 개진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

출처: 2011년 당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 The Effect of Suitable Business Category Regulation on High Potential Enterprise's Profit and Growth

Seokjin Woo\* · Myung Hoon Yi\*\* · Sangmin Lee\*\*\* · Ki Beom Binh\*\*\*\*

### Abstract

In Korea, there are a large number of large-medium enterprises. They are neither large firms nor large business groups but more developed and profitable ones than small-medium enterprises. In addition, they are a kind of ridgepole in Korean economy and have a high potential to large and global firm.

In this paper, with causality perspective we examine the policy effect of *Suitable Business Category Regulation* for protection and growth of SMEs initiated in 2011 on the profit and growth of large-medium enterprises which are not subject of guard but of removal by the regulation in Korea. So they are opposed to this regulation.

Using firm-level panel data, we can not find a strong evidence that the regulation would harm the large-medium enterprises using DID and propensity score technique. However, we can detect that the growth of total asset and sales of them are damaged by the regulation with high and low statistical significance,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 regulation of protection of SMEs cause the loss of large-medium enterprises irrelevantly. It is the very cost of that regulation. So it should be ameliorated for avoiding the growth decline of large-medium enterprises, since they have a essential role in Korean economy.

Key words: The Suitable Business Category Regulation, Cooperative Partnership, High Potential Enterprise, Treatment Effect

JEL: D47, D61, K2, L5

---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Co-Author  
\*\*\* Manager, Gyeonggido Job Foundation,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저자 우석진은 현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위스콘신주립(메디슨)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재직하였다. 주요연구 분야는 재정, 노동, 응용계량경제학, 정책평가 등이다.
- 저자 빈기범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서 1998년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2001년 경제학 석사, 2004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위원/실장으로 재직하였고, 2009년부터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응용계량경제학, 금융계량경제학이다.
- 저자 이명훈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에서 전문연구역으로 재직한 바 있고,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 소비이론 등이다.
- 저자 이상민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2012년 학사, 동 대학원에서 2014년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2017년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재직 중이다.